

## 5 대학직장 예비군연대

### 1. 편성대상

- 가. 본 대학교(대학원)에 재학 중인 예비역 및 보충역의 학생
- 나. 본 대학교에 재직 중인 예비역 및 보충역의 전임강사 이상 교수, 조교, 사무직원

### 2. 교육훈련

- 가. 대학 예비군 중 학생과 전임강사 이상 교수는 방침일부보류 대상자로 구분관리하며 이 중 1~6년자는 훈련을 기본훈련 8시간만 실시한다.
- 나. 후반기 9월 졸업자는 졸업 전에 훈련을 필할 수 있도록 한다.
- 다. 훈련과목 및 시간

계	안보교육	사격	전술과제
8	2	2	4

- 라. 교육훈련 불참 시 보충교육을 받아야 하며, 3회 무단 불참 시 예비군 설치법 제6조 및 15조에 의거 관계기관에 고발 처리된다.
- 마. 사무직원 및 조교는 학생예비군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연차별 교육 시간을 적용하여 훈련을 실시한다.

### 3. 연차별 교육 시간

구 분	연 차	훈련 명	교육 시간	비 고
교수, 학생	1~6	기본 훈련	8	방침일부보류
사무직원, 조교	1~4	동원지정	동원훈련 (2박3일)	28
		동원미지정	동미참훈련(4일)	32
사무직원, 조교	5~6	기본 훈련	8	
		작계훈련(전6, 후6)	12	

※ 7~8년차 예비군 훈련 면제(비상소집망 점검 : 전·후반기 각 1회 점검)

### 4. 예비군 편성 및 절차

- 가. 군휴학 학생은 인터넷으로 군복학 신청 시 군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복학 신청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전입신고가 된다.

나. 일반휴학 복학생은 본인이 직접 학교 홈페이지 → 통합정보시스템 → 예비군 → 예비군전입신고란에 신고한다.

※ 기초정보가 있다고 전입신고가 끝이 아니라 수정 및 저장을 꼭 눌러야 함.

다. 재학 중 주민등록 주소(법적 주소지 : 읍·면·동사무소에 등록된 주소) 변동 시, 즉시 해당 읍·면·동사무소에 주소지 이전 신고를 한다.

## 5. 교육훈련 연기 및 보류

가. 연기 : 질병 또는 심신 장애가 있는 사람, 직계 존·비속 등의 위독 및 사망 천재지변 등 재난, 국외출국자, 국가 또는 공공단체 주관으로 시행하는 면허자격시험 응시, 주요업무(주요 업무는 예비군 훈련 1~6년차 기간 중 6회까지만 가능)

나. 보류 :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은 치료기간이 6개월 이상의 진단서 제출 시 보류 처리, 국외 출국자는 1년 이상 장기 출국자인 경우 보류 처리, 국가유공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류 제출 시 보류 처리.

(※ 단 치료기간 및 출국기간에 부과된 훈련에만 유효함.)

## 6. 병력동원 소집 통지서

가. 병무청에서 발급되는 전시를 대비한 소집통지서로 병무청에서 각 동원지정자에게 우편으로 발송 하며, 예비군은 이를 수령하여 보관, 숙지하여야 한다.

나. 병무청에서 통보되는 병력동원 소집통지서를 수령한 동원지정자는 국가유사시에 동원령 선포가 되면 통지서에 명시된 장소와 시간에 입소하여야 한다.

(※ 병무청에서 미 전달된 병력동원 소집 통지서는 학교 예비군부서에 위임된다.)

## 7. 대학생 예비군 관련 규정

가. 관련근거 : 예비군 조직·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(제14조)

나. 각 급 학교 학생 중 학적조회를 통해 수업연한을 초과한 경우 보류대상(본 대학 편성)에서 제외 하며, 지역예비군부대에 편성한다.

다. 제외 대상

### ○ 학부

- 4년제 : 9학기 재학생부터 방침일부보류대상 제외
- 5년제(건축학과) : 11학기 재학생부터 방침일부보류대상 제외

### ○ 대학원

- 석사(일반) : 5학기 재학생부터 방침일부보류대상 제외
- 석사(특수) : 6학기 재학생부터 방침일부보류대상 제외
- 박사 : 7학기 재학생부터 방침일부보류대상 제외